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8
----------	-----

제출년월일 : 2005.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제천학사운영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공무원단체 업무, 백두대간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보강 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62명에서 969명으로 7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 945명을 952명으로 7명 증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변동없음)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및 제21조

4. 의안전문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첨 부 : 참고자료 1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962명”을 “96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45명”을 “95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정원의 총수)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962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945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7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u>969명</u>..... </p> <p>1. <u>952명</u> 2.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자치행정과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4. 11.

★ 박종철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자치행정과 박종철	○ 이동호	이동호	76	이동호
협조: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				

기구 및 정원조정 검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구 및 정원조정 검토

제천학사의 운영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 및 상급기관의 인력보강
지침에 따른 분석 보고입니다.

□ 제천학사 운영에 따른 인력배치

○ 조직운영

- 기획감사실 서울사무소 직제에 편입운용
 - ➡ 분장사무 추가 : 제천학사 운영 및 관리

○ 인력운영('05. 1월초순 배치)

- 원장 : 서울사무소장 겸직(행정6급)
- 관리인력
 - ➡ 일반사무 1명(행정7급) - 희망자 공개모집
 - ➡ 사감 2명(계약직)
- 운영인력('05. 2월중순 배치)
 - ➡ 영양사 1명(계약직)
 - ➡ 일용직 3명(일시사역인부) - 현지채용

○ 민간위탁

식당운영 및 청소관리에 대하여 1년 정도 직영 후 민간위탁

○ 정원조정

- 일반직 1명 증(행정7급)
- 계약직 3명 증(라급-8급상당)

□ 상급기관 인력보강지침 분석

①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인력 보강

- 기능 : 직장협의회 운영지원·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
- 기구 및 정원규모

- 기구명칭 : 공무원단체담당
- 정원규모 : 3명(6급 1, 7급 1, 8급 1)

■ 분석의견

-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완료 후 정식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등 업무까지는 여유가 있으며,
- 도내 타시군의 경우 대부분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금번 정원승인신청(7급1, 8급1) 후, 현재 담당부서에 직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필요시 직제개편 등 기구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도 현재 자치행정과 총무팀에 직원을 증원 배치하여 업무를 전담케 하고, 수요발생 등 도내 형평에 맞춰 기구(담당)를 설치하는게 바람직 함

○ 정원조정

- 일반직 2명 증(행정7급 1명, 9급 1명)
 - 직급별정원책정기준(비율)에 따라 8급을 9급으로 조정

②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보강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05.1.1)에 따른 자연생태계 보전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 보강인력
 - 직 렐 : 임업7급
 - 인 원 : 1명(보호구역 면적 1만ha미만 시.군에 해당)

■ 분석의견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지원사업추진, 산촌육성 추진, 사유 토지 매수, 개발제한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 등에 전담할 인력보강 필요
- 정원조정
 - 일반직 1명 증(임업8급)
 - 직급별정원책정기준(비율)에 따라 8급으로 조정

정원조정(증원)

직 력	직 급	인 원	비 고
계		7명	· 7급 : 2명(행정) · 8급 : 4명(계약3, 임업1) · 9급 : 1명(행정)
행정	7급	2	· 제천학사 관리 1 · 공무원단체담당 업무 1
행정(계약) 임업	8급	3 1	· 제천학사 사감 및 영양사 3 · 백두대간보호업무전담 1
행정	9급	1	· 공무원단체담당 업무 1

 정원조정 현황(일반직)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조정전	720	5	44	180	225	175	91
조정후	727	5	44	180	227	179	92
비율(%)	증 7	0.6	6	24.7	31.2	24.6	12.6
기준(%)		1%이내	7%이내	26%이내	30%이내	24%이내	12%이상

* 7급, 8급의 기준이상은 4급, 5급의 기준이하와 상계조정

 정원총계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지도직)	기능직	별정 · 정무
조정후	969	761(34)	191	17
비율(%)		78.5	19.7	1.7
기준(%)		78%이상	20%이내	2%이내

* 표준정원 948명 대비 증21명

* 보정정원 976명 대비 △7명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점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를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5.16 2000.12.3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학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학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

■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인구·면적 기타 행정수요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신설 1998.8.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⑥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표준정원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31>

■ 제14조의2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연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⑤제4항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등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⑥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8.31>
 [본조신설 1997.2.4]

■ 제15조 (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

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1995.5.16>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혼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이기 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5.16, 1998.8.31>
- ⑥삭제 <1998.8.31>
- ⑦삭제 <1998.8.31>

■ 제16조 (별정직 정원) ①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일용하기 근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상당계급을 상황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2.4>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별정직 외의 정원으로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별정직 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정원으로 변경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30>

■ 제17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지방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 및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11.18]

■ 제18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근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지방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11.18]

■ 제19조 (한시경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경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경원만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8.31, 2001.12.19>

②한시경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경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경원은 소멸된다. <개정 2001.12.19>

④삭제 <1998.8.31>

⑤한시경원은 한시경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신설 1997.2.4>

⑥한시경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경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2.4, 2001.12.19>

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경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경원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경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신설 2001. 12. 19>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자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01. 12. 19>

▣ 제20조 (직급별 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이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정원감축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다. <개정 1995. 5. 16., 1995. 12. 28., 1998. 8. 31>

1.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 : 경무직 지방공무원, 일반직 4급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4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4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2. 광역시·도·시·군·자치구 : 경무직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령 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5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중 지방공무원임용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정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8., 1998. 8. 31>

▣ 제21조 (경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 5. 16., 1998. 8. 31., 2000. 12. 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학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8. 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최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 2. 4>

④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결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2. 4>

▣ 제21조의2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 제21조의3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19]

제6장 보칙

▣ 제22조 (시정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 및 이 영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8., 1997. 2. 4., 1998. 8. 31>

② 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 2. 4>

▣

제23조 (조직진단)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자체조직진단 및 그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